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 11 차 민 속 문 화 재 분 과 회 의 자 료

- 일 시 : 2023. 11. 14.(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왕직(위원장), 구미래, 남해경, 이은주,
이은하, 천진기, 최원석, 최종희, 홍석주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지정	(공개)
2	홍성 사운고택 주변 마을쉼터 조성(재심의)	(공개)
3	장흥 오현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재심의)	(공개)
4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 설치	(공개)
5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공개)
6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 기간 연장	(공개)
7	안동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공개)
8	경주 양동마을 내 노유자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9	장흥 방촌리 석장승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11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공개)
----	--------------------------	------

【보고사항】

12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공개)
----	-----------------	------

심의사항

1.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의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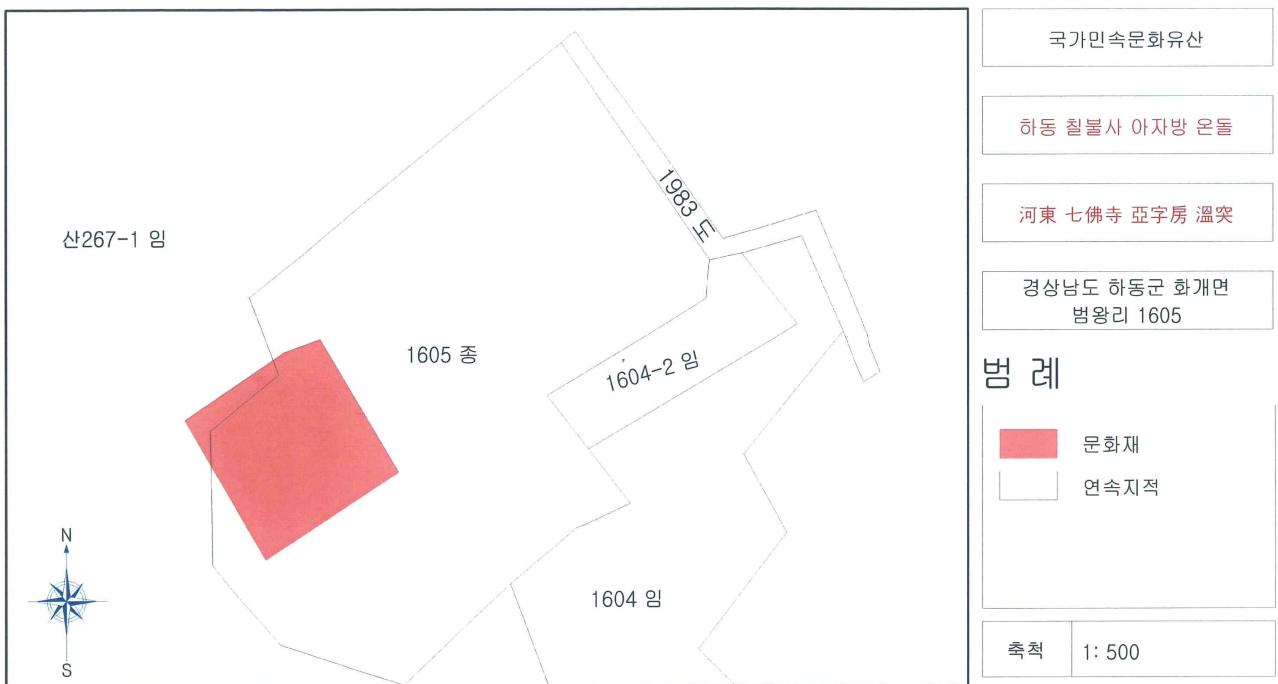
-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경남 유형문화재 제144호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23. 3. 22.) 道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역사적 인물, 민속적인 부분 보완)
 - ('23. 6. 5.)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
 - ('23. 7. 17.)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실시
 - ('23. 9. 12.) 제9차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조건부가결
 - 지정명칭은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로 하고, 지정범위는 아자방 일곽(굴뚝포함)으로 함
 - 상부 구조 및 아궁이 형태는 차후 고증 필요
- ('23.10.6.~11.5.) 지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2023-359호)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소재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 지정범위 : 문화재지정구역: 468m²(2필지)

<문화재지정구역> 2필지, 468m²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비 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종교용지	3,326	427	대한불교 조계종 칠불사	
	산267-1	임야	1,351,571	41	대한불교 조계종 칠불사	
	계		1,354,897	468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아자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아궁이 문 확돌을 통해 아궁이의 층위와 구조를 추정할 수 있었음. 조선시대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 고려시대 이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6.25 전쟁으로 상부는 파괴되어 원형을 잊어버렸으나 온돌만큼은 그 원형이 현재까지 지켜졌음. 따라서 칠불사 아지방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원형이 변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님.
-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궁이에도 있음.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온기를 한 달 이상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마형 아궁이와 같이 특별한 구조여야 하는데, 당시 구들와 아궁이에 대한 원리와 구조에 대한 탁월한 기술적 이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건축사적, 기술사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유적임을 알 수 있음. 다만 자료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가마형 아궁이가 원형으로 복원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칠불사 아자방은 역사적, 건축적,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유적이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선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무형의 민속적 가치도 뛰어난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 ○○○>

-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방의 양 끝을 L자를 맞댄 형태로 고래둑을 높이 쌓아 구들을 놓고 십(十)자형을 이루는 가운데는 낮게 구들을 놓아서 방 전체에 아(亞)자 형태의 구들을 이룸
- 전통불교의 선문화와 한국의 온돌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고유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민속적 의미가 큼
- 현재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온돌 유구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문데,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나와서 문헌 기록과 함께 유구도 갖춘 희소성 있는 사례임
- 참선 수행 공간으로서의 불교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온돌의 역사적, 민속적, 건축적 가치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손색이 없어 보임

<문화재전문위원 ○○○>

- 아자방 온돌은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과 불교의 선문화가 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민속유산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유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선승들의 수행처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으로서 불교사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여러 차례의 소실과 복원(보수)공사 등을 거치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온돌(구들)이라는 유산의 성격으로 볼 때 원형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임.
- 지정 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등의 영역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인근에 아자방(온돌방)을 재현한 시설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보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문화재 위원회에서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16.>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조사자	성명		전공 분야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온돌	
	문화재 명칭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칠불사 중심영역의 불전 서쪽에 위치하며 선당으로서 역할	
	연혁 · 유래 및 특징	신라 효공왕(孝恭王, 897-911) 때 금관가야에서 온 담공선사가 초창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됨. 문헌기록을 통해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형태의 변화없이 보존된 것으로 확인됨.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온돌로서 문헌기록이 많고 고려시대 온구들이 변화없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가치와 불을 때면 한 달 이상 온기가 보존되었다고 하는 건축 및 기술적 가치, 현재까지 선당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민속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유산임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아궁이와 굴뚝을 포함한 사방 일정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경비 및 활용 착안사항		고려시대 유물인 아궁이 문지도리 화석과 계단석은 노출 원형 보존 및 전시하고 아궁이와 구들은 고증에 따라 정비 복원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 민속적으로 가치가 있음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할 것	
종합의견		역사적, 건축적, 기술적 가치라는 가시적인 부분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무형의 민속적 가치가 공존하는 매우 뛰어난 유산으로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현지조사 의견서

○○○(○○○대학교 교수)

유적명칭 :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범왕길 528

현 지정사항 : 경상남도 유형 제144호(1976년)

1. 조성과 변천

칠불사 아자방지는 경남 하동에 있는 칠불사의 선당에 만들어진 온돌방이다. 칠불사(七佛寺)라는 사명은 1967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칠불암(七佛庵)으로 불렸다. 칠불암은 조선후기의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광여도 등 대부분의 지리지에 나타나며 명칭이 기록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문헌은 『동국여지승람』(1481)이다. 여기서 “칠불암은 삼신동에 있는데 옛 이름은 운상원(雲上院)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칠불암 아자방의 축조연대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 지마왕(祇摩王) 8년(119)에 담공선사가 만들었다는 설과 신라 효공왕(孝恭王, 897-911) 때 금관가야에서 온 담공선사가 축조했다는 설이다.(김수인, 「칠불사 연기설화의 성립사적 검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0, 2014.6, 348-349쪽). 창건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문헌적 전거를 찾기 어려우며 지마왕 때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므로 신라 효공왕 때 담공선사가 처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건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 문헌에도 아자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유적으로 아궁이의 석단을 쌓았던 석렬 일부와 아궁이 문지도리석으로 추정되는 화돌이 발견되어 고려시대에도 아자방이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자방에 대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후기이다. 관찰 문헌으로는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31권, 경상도 하동 불우편, 1757-1765)가 있다. 여기서 칠불암에는 “아(亞)자 모양처럼 생긴 방이 하나 있는데 불을 때면 골고루 따뜻하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어느 시대 때 지은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고친적이 없다고 한다”(변주승 역주, 여지도서41 경상도 보유1, 2009, 89쪽). 『조선왕조실록』에서도 ‘其中有亞字僧房’(정조9년 을사 3월23일 3번째기사, 1785)이라고 하여 칠불암에 아자 형태의 승방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사찰자료집인 『梵宇攷』(1799)와 신경준(1712-1781)의 『伽藍考』에도 아자방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아자방에 대한 기록은 문인들의 유람기에 집중되어 있다. 아자방의 명칭도 승려 경암(鏡巖)은 그의 시문집 『경암집』 「칠불암기」(1804)에서는 ‘高僧堂’이라고 하였고, 노광무(盧光懋)는 유람록(1840)에서 ‘默言閣’이라 하였으며, 안인제의 유람록

(1903)에서는 ‘碧眼堂’이라고 하였다. 아자방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는 18-19세기 여러 유람록을 요약하면 “중앙은 낮고 사방의 가장자리는 높은데 그 높이 차이는 2-3척 남짓이며 불을 지피면 위 아래층의 온돌이 데워지고 식는 것이 한결같다. 또 칠불암이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이 건물은 신라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고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黃道翼(1678~1753)의 유람록인 「頭流山遊行錄(1744), 朴來吾의 「遊頭流錄(1752), 유문룡의 유람록(1799), 盧光懋의 유람록(1840)).

20세기 초의 유람록도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김택술의 「두류산유록」(1904, 후창선생문집), 안익제의 유람록(1903), 이보림의 유람록(1937)). 특별히 안익제의 유람록에서는 무쇠와 주석으로 장식했다는 내용과 이보림의 유람록에는 ‘한 번 뱕나무를 지고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때면 한 달 동안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아궁이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게로 뱕나무를 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컷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신문기사에서 아자방을 소개하고 있다. 중첩된 내용을 제외하면 1926년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요철부 벽면은 주석으로 장식하고 장판의 외곽은 팔엽연화형의 백동으로 장식하였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1938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아지방의 높은 곳은 좌선처로 사용하며 낮은 곳은 행경(行徑)으로 사용하는데 이중온돌로 한 번도 고래가 막혀본 적이 없다”고 기록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도 아자방의 모습은 잘 보존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여수·순천사건과 6.25 전란으로 아자방도 온돌만 남기고 건물은 전소되었다. 이후 온돌을 보호하기 위해 함석지붕으로 덮어 유지하던 중에 1976년에는 경남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되었고, 1981년 발굴조사를 통해 1982년 지금과 같은 모습의 목조 기와집으로 복원하였다. 복원하기 전 당시 문화재관리국 직원이었던 변철수는 개인적으로 온돌의 모습을 실측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2009년에는 경남 인근에 사는 안진근 구들명장에 의해 해체수리되었으나 다시 2015년에 해체수리가 진행되었다. 해체과정에서 발굴이 논의되어 2017년에 발굴조사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 발굴을 통해 아궁이 부분의 석단과 아궁이 문획들이 발견되었다. 해체된 온돌은 발굴자료 등을 참고하여 2023년 현재 고려시대 유적을 노출시키고 구들과 가마형 아궁이를 복원하여 수리 중이며 곧 수리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 온돌의 구조와 형식

아자방은 중심사역에 있으며 대웅전 및 문수전의 전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칠불사는 대웅전과 문수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설선당, 서쪽에 아자방, 남쪽에 보설루가 배치된 전형적인 산지 중정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아자방은 선당으로 쓰였으며 설선당을 승당이라고 볼 수 있다.

선당인 아자방 건물은 1982년 온돌 모양에 맞추어 복원하였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

이다. 5칸 중에서 남쪽 2칸은 아궁이이고 북쪽 3칸은 구들이다. 구들 전면(서쪽)에는 3칸에 걸쳐 퇴를 두었다. 이로 미루어 아자방은 전면이 서쪽이며 서향으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온돌방은 남북 3칸, 동서 1.5칸인데 중심선상에는 남쪽에 아궁이를 두고 북쪽에 굴뚝을 설치했다.

온돌은 아(亞)자 모양으로 단 차가 있어서 아자방으로 불렸으며, ‘十’자형으로 낮은 부분은 행경처로, 남북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ㄷ’자형의 높은 부분은 참선처로 사용했다.(七佛寺復元事蹟碑, 1995/ 1938. 08. 28 조선일보 기사)

요철(凹凸) 부분에 모두 구들이 놓인 온구들 형식인데 낮은 부분의 구들도 함실에서 굴뚝에 이르기까지 고래는 물론 고래둑의 높이 차이도 일반 구들과 달리 상당히 크다. 조선시대 유람록(황도익의 두류산행록, 박래오의 유두류록, 김택술의 두류산유록)에서는 아자형의 높고 낮은 곳이 2-3자 정도 높이 차이가 있으며 불을 때면 위아래가 골고루 따뜻하며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동아일보 1939년 9월 8일자 “천년아자방의 신비”기사에서는 二重溫突房이라고 하였고 1995년의 「七佛寺復元事蹟碑」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변철수가 실측한 구들 도면에 이중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네 모서리의 아(亞)자형 구들 부분이 낮은 ‘十’자형 구들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2009년 안진근 구들장도 이중구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아궁이도 평범하게 함실아궁이로 보수하였다. 즉 중앙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퍼져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2023년 수리에서는 이중온돌에 대한 기록과 구들의 고고학적 조사에 따라 낮은 부분인 남쪽의 철(凸)부는 이중구들로 하였고, 북쪽의 철(凸)부와 낮은 십(+)자부는 단층구들로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중온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궁이 부분은 구들보다 5자(1.5m) 정도 낮게 설치되었다. 남쪽 2칸에는 아궁이를 설치하였는데 퇴를 제외한 온돌 중심에 아궁이를 위치시켰다. 온돌과 아궁이는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돌방과 사이에 놓인 벽체의 고맥이석 아래로 석축을 쌓고 석축 앞으로 가마형 아궁이를 설치했다.

2017년 발굴 이전에는 평범한 함실아궁이였으나 발굴을 통해 보조아궁이도 발견되었고 아궁이 전면의 문지도리 확석(2023년 시굴을 통해 적십석 등이 발견됨에 따라 원 위치임이 확인됨)도 발견됨에 따라 아궁이 바닥 높이가 밝혀졌다. 또 아궁이와 함실 사이에도 단차가 있었으며 고려시대 석단 한 단이 발굴되었고 동서 출입문에서 아궁이 바닥으로 오르내리는 석단 중 일부도 고려시대 유적으로 발굴되었다. 따라서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자료, 지계로 땔감을 지고 아궁이로 드나들었다는 기록(이보림의 유람록), 한 번 불을 때면 한 달에서 100일까지 온기가 보존되었다는 정황 등으로 추정하면 평범한 함실아궁이로는 불가하므로 가마형 아궁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마형 아궁이로 복원하였다. 그러나 가마형 아궁이의 구조, 규모, 형식은 정확히 고증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지정가치

한국의 온돌은 철기시대 북옥저의 쪽구들을 시작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남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방 전체에 구들을 들이는 온구들은 고려시대 이후 남쪽에서 보급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쪽구들은 중국에도 전파되어 칭(坑)이라고 하는 침대형 온돌로 남아 있다. 이처럼 구들을 이용해 방바닥을 덥히는 난방방식인 온돌은 한민족의 이동에 따라 한민족이 거주했던 지역마다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온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온돌은 수없이 발굴되어 고고학적으로는 고증되었지만 문헌에 기록된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온돌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온돌에 대한 단독 기록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된다. 그러나 칠불사 아자방은 그 구조의 특이성과 성능의 우수성 때문에 조선시대 수없이 많은 문인들이 유람록을 통해 기록을 남겼다. 온돌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드문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창건에 대한 기록으로 사기나 사적이 남아 있지 않아 사찰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신라 효공왕(孝恭王, 897-911) 때 금관가야에서 온 담공선사가 축조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확실한 기록도 없고 발굴을 통해서도 고려시대 충위까지만 나타났기 때문에 초창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 사료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아자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아궁이 문화돌을 통해 아궁이의 충위와 구조를 추정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서 고려시대 이후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6.25전쟁으로 상부는 파괴되어 원형을 잃어버렸으나 온돌만큼은 그 원형이 현재까지 지켜졌다. 따라서 칠불사 아자방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원형이 변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 아자방은 특수한 용도 때문에 아(亞)자 형태로 높낮이가 다른 온돌을 꾸몄다는 점과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에 동시에 구들을 들인 온구들 형식이라는 점이다. 쪽구들이 남하하여 온구들로 변화한 시점은 아직까지는 조선시대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그러나 아자방은 고려시대 충위가 발굴됨에 따라 초창은 아닐지라도 최소 고려시대부터는 온구들이었으므로 온구들의 시기를 올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아자방 형태의 구들은 조선초 양주 회암사지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중국 심양고궁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자형으로 온구들 형식인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심양고궁이 온구들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사대도 많이 뒤진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궁이에도 있다.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온기를 한 달 이상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마형 아궁이와 같이 특별한 구조여야 한다. 당시 구들과 아궁이에 대한 원리와 구조에 대한 탁월한 기술적 이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건축사적, 기술사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유적임을 알 수 있

다. 다만 자료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가마형 아궁이가 원형으로 복원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칠불사 아자방은 역사적, 건축적,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유적이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선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무형의 민속적 가치도 뛰어난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지정범위와 명칭 제안

온돌 상부는 1982년 복원된 것으로 유산적 가치는 없으며 온돌의 보호각 정도의 역할로 볼 수 있다. 평면적으로는 온돌을 구성하는 아궁이와 구들, 굴뚝 정도가 유산적 가치를 지니는데 문지도리 확석의 위치로 미루어 그 남쪽으로 일정 부분까지 아궁이 영역으로 학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굴뚝과 확석으로부터 일정 구간까지를 지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가마형 아궁이는 추정 복원한 것으로 앞으로 고증을 통해 원형 복원할 수 있도록 융통적으로 열어 두어야 하며 고려시대 유물로 확인된 문지도리 확석과 계단석 등은 노출하되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해야 한다.

아자방은 온돌의 역사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유적이지만 고려시대 이후 용도가 변하지 않고 선방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물리적인 유산에 쓰임이라고 하는 민속적인 가치가 계속 병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자방은 충분한 고증과 복원정비를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정명칭과 관련해서도 물리적인 유산의 보존에 입각한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보다는 쓰임을 포함한 민속적 가치에 중점을 둔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로 제안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년 7월17일		
조사자	성명	대상문화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소속	전공 분야 직위(직책)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주요 지정 사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불사(七佛寺)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지리산 반야봉의 남쪽 800m 고지에 위치함 • 담공선사(曇空禪師)가 아자방(亞字房)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음 • 고려시대의 정명선사, 조선시대의 서산대사, 부휴대사, 초의선사 등이 수행하였음 	
	연혁 · 유래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 효공왕(897~912년) 때 담공선사가 벽안당碧眼堂(일명: 아자방)을 건립하였다고 함 • 1830년 화재 후, 1832년에 사찰의 다른 전각과 함께 아자방도 중건함 • 1949년 여순사건으로 칠불사의 전각들이 소실되었어도 아자방 구들만은 남아 있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복원 및 보수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른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방의 양 끝에 ㄷ자를 맞댄 형태로 고래둑을 높이 쌓아 구들을 놓고 십(十)자형을 이루는 가운데는 낮게 구들을 놓아서, 방 전체가 아(亞)자 형태로 구들을 이루는 독특한 온돌임 • 현재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온돌 유구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문데,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나와서 문헌 기록과 함께 유구도 갖춘 희소성 있는 사례임 • 참선 수행 공간으로서의 불교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온돌의 역사적, 민속적, 건축적 가치가 높음 	
	지정 대상 및 범위	<p><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p> <p><보호물></p> <p><보호구역></p>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불사 아자방의 독특한 온돌 구조의 기본은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차례의 보수 과정에서 원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복원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검토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전통불교의 선문화와 한국의 온돌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민속적 가치가 높음 •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충위별 유구가 발견되어, 문헌 기록과 유구가 함께 존재하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손색이 없어 보임 • 다만 현황이 원형에서 많은 변형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종합계획에 의한 복원과 활용이 필요함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제출자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세부 내용 별첨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유적명칭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1976)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경상남도 하동군 범왕길 528]
-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자문 내용 목차

1.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의 연혁과 특성
2.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의 필요성
3.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1. 하동 칠불사 아자방의 온돌의 연혁과 특성¹⁾

1)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의 연혁 및 수리 이력

- 신라 효공왕(孝恭王 897~912) 때 담공선사(曇空禪師)가 벽안당(碧眼堂) 일명 아자방(亞字房)을 건립하였다고 함
- 순조 30년(1830) 칠불사 화재 때 소실되어 순조 32년(1832)에 금담선사(金潭禪師)와 대은선사(大隱禪師)가 중건

1)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3, 경상남도, 참조

*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그림과 도면의 출처도 위와 같음

- 1907년 토비의 난으로 칠불사의 승려들이 흩어졌다가 1910년에 다시 선사(禪社)를 크게 열었는데 이 때 당우들을 서기룡(徐起龍) 화상이 칠불사의 퇴락된 전각을 중수
 - 1949년 여순사건 시 전소되고 아자방 구들만 남음
 - 1976년 아자방지(亞字房址)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
 - 1981~1982년 아자방 복원
 - 2009년 아자방 구들 이맛돌 보수공사
 - 2015~2017년 아자방 해체 보수 중 발굴조사
 - 2023년 현재 아자방지 건물 및 구들 복원공사 중

2) 아자방 온돌의 특성

-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에 조성된 건물지와 그 위로 1832년(순조 32)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자방과 관련된 건물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됨
 - 고려시대 건물지는 상단(아자방 부분)과 하단(아궁이 부분)으로 약 1.6m 정도 단을 이루면서 조성됨
 - 방의 좌측에 “匱” 자형, 우측에 “匱” 자형으로 수도승이 면벽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높이 350mm정도의 침상처럼 바닥을 높인 부분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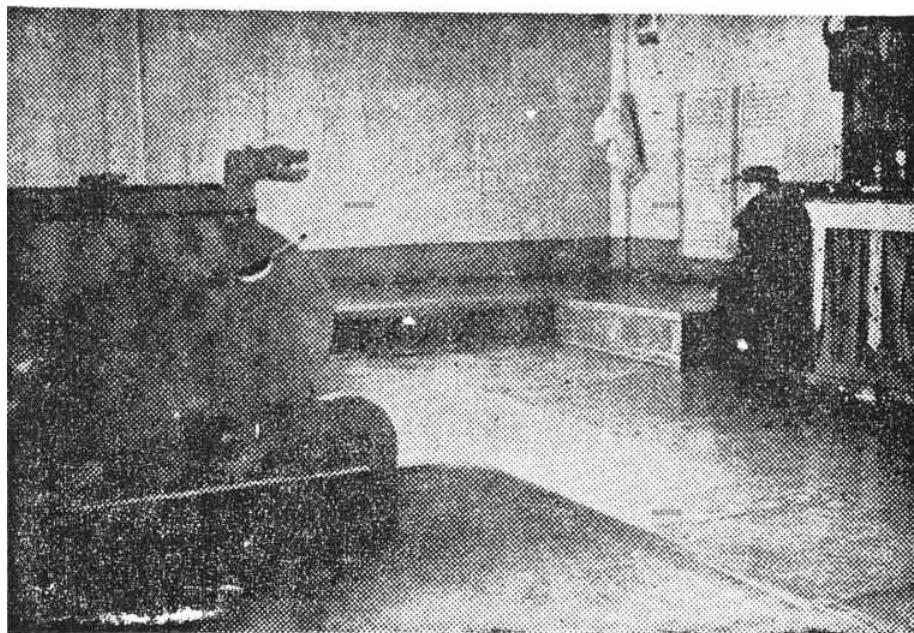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신문기사 사진(1938.08.28.)

- 침상처럼 높은 곳이 좌선처(坐禪處)이고,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은 경행처(經行處)임

- 1981년 사전 발굴조사 당시 1m이상의 바닥두께와 10cm두께의 방바닥장판이 있었다고 하며, 두께가 20cm이상 되는 구들돌이 다수 발굴되어 바닥을 두껍게 조성했음을 알 수 있음
 - 고래바닥 높이는 아(亞)자 형태이며 좌우측면의 고래바닥은 중앙 고래바닥 높이 보다 180mm~330mm정도 높게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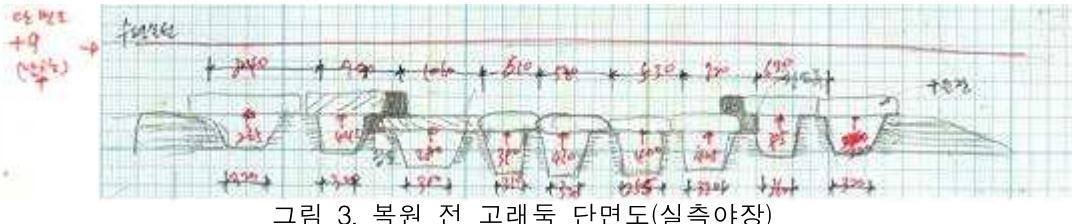


그림 3. 복원 전 고래둑 단면도(실측야장)

- 아자방지의 고래 개자리는 좌우로 양분되어 있으며, 연도는 2개로 구성하여 각각 배연되도록 구성됨
 - 1980년대 복원당시 기초조사를 통해 주 아궁이와 보조아궁이로 구성되었던 것이 확인됨



그림 4. 아자방지 보조아궁이(좌)와 주아궁이(우)-(1981)

- 합실아궁이를 가마형태로 조성하고 연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 불목에는 “人” 자 형태의 불목돌이 화기와 연기를 고래로 고르게 넘어 가도록 함



그림 5. 아궁이 해체 불목돌 상세

- 아궁이 확돌은 온돌에 불을 지피기 위한 가마 통구의 초석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 유구로 확인됨

2.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필요성

1) 무형의 가치 : 전통불교의 참선 수행 공간²⁾

- 칠불사(七佛寺)는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의미하는 반야봉을 주봉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수신앙 중심지로서 지리산 중심부에 위치하며, 창건신화가 문수신앙과 관련이 있음
 - 『조선왕조실록』³⁾을 비롯하여 문집에 이르기까지 아자방 온돌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이 다양하게 존재함
 - 차의 성인[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초의이순(草衣意恂), 1786~1866)가 차의 이론서인 『다신전(茶神傳)』을 아자방에서 정리하여 한국 차문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참선 수행 공간으로서의 아자방은 불교의 보편성과 한국고유의 특수성을 함께 보여줌

2) 유형의 가치 : 온돌 유구

-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전통불교의 선문화와 한국의 온돌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임

2)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참조

3) 『조선왕조실록』의 정조실록(정조 9, 1785년)

- 칠불사 아자방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고유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민속적 의미가 큼
-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나와서 문헌 기록과 함께 유구도 갖추었음
 -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방의 양 끝을 L자를 맞댄 형태로 고래둑을 높이 쌓아 구들을 놓고 십(+)자형을 이루는 가운데는 낮게 구들을 놓아서 방 전체에 아(亞)자 형태의 구들을 이룸
 - L자형 탁상구조의 온돌을 두어 승려들의 참선 공간으로 사용했던 양주 회암사 서승당과 유사한 구조를 하여 향후 비교연구의 토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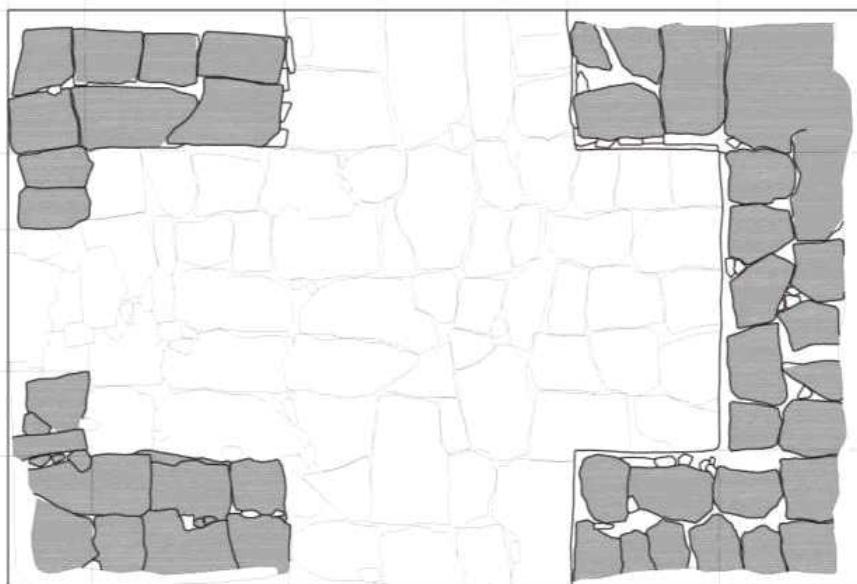


그림 6. 아자방 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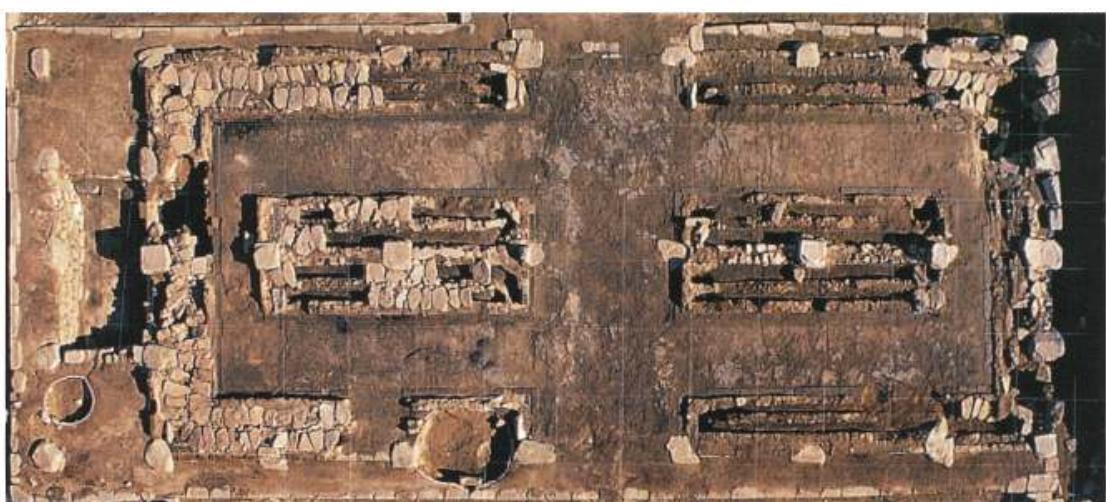


그림 7. 양주 회암사 서승당 온돌(그림출처:온돌:회암사의 겨울나기, 양주시립박물관, 2019)

-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확돌과 석렬이 발견되어, 담공선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라시대의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고려시대의 건축 유구임이 밝혀짐
- 가마형으로 추정되는 아궁이 전면부가 발굴되어 문헌으로만 알려진 아궁이의 크기가 일부 규명됨
- 아궁이 확돌은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유구이며 교란이나 옮겨놓은 흔적이 없음이 확인됨



그림 8. 고려시대 유구로 확인된 확돌

- 칠불사 아자방 온돌은 참선 수행 공간으로서의 불교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온돌의 역사적, 민속적, 건축적 가치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손색이 없어 보임

3.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 1980년대 실측조사 자료와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복원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 칠불사 아자방의 독특한 온돌 구조의 기본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차례의 중건과 보수 과정에서 원형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복원 시 기준으로 삼는 시대 설정이 중요함
 - 특히 가마 형태의 아궁이 복원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시대 기준을 정하고 근거에 의한 복원공사가 진행되어야 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7.17	대상문화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조사자	성명		전공 분야
	소속		직위(직책)
문화재 종류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 명칭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주요 지정 사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연혁 · 유래 및 특징	《세부 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 내용 별첨 참조》	
검토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 일곽	
		<보호물>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별도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으로 기 고시된 허용기준을 토대로 보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과거 스님들의 참선 등을 위한 선방(온돌방)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유산인 만큼 이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보존, 정비 및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함.	
종합의견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과 불교의 선문화가 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민속 유산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유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선승들의 수행처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으로서 불교 사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온돌의 구조 등을 통해서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임. 반면 여러 차례의 소실과 보수공사 등을 거치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나 온돌(구들)이라는 유산의 성격으로 볼 때 원형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2023년 7월 18일

(서명 또는 인)

《별첨》

「하동(河東) 칠불사(七佛寺) 아자방지(亞字房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칠불사(七佛寺)는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본사인 쌍계사(雙磎寺) 말사(末寺)로 지리산 서남쪽 기슭 해발 600m~700m 고지인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이 창건된 시기에 대해 정확히 확정 짓을 수 없으나 1세기경 장유화상을 따라 출가한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성불하였던 곳 등의 여러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반면 조선시대 이후의 사찰에 대한 정황은 전해져 오는 여러 문헌상의 기록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리산을 주봉으로 하는 칠불사는 신라시대 도선국사(道誅國師)가 칠불사 자리에 대한 풍수적 언급이 있었을 정도로 예로부터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역사경관을 비교적 잘 유지해 오고 있다.
- 지정 신청 대상인 ‘아자방지(亞字房址)’는 오늘날 칠불사 경내의 서측편에 위치해 있는 온돌방 유구(遺構)로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선방(禪房)으로 사용해 온 곳이다. 글자 그대로 ‘아자형(亞字型)’의 독특한 형태로 구들을 놓아 만든 방이라 하여 흔히 아자방(亞字房)으로 불린다. 아자방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신라 효공왕(재위 897~912년)때 ‘구들도사’로 널리 알려진 담공선사(彙空禪師)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지미왕8년(911년)에 지었다는 기록(칠불선원사적기(七佛禪院史蹟記))도 있어 정확히 년도를 특정 할 수는 없으나 대략 신라때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조선시대 이후 여러 형식의 기록에서도 신라때 지어진 뒤로 온전히 보존되어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 아자방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계승해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왕조실록(정조)을 비롯해 조선 중기 이후의 여러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그 정황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옛 선인(先人)들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남긴 ‘지리산 유람록’ 중에는 아자방의 독특한 형태와 이중 온돌이라는 특이한 구조, 탁월한 난방 기능 등을 자세히 묘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기록에서는 고승당(高僧堂), 묵언각(默言閣)

閣), 벽안당(碧眼堂)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아자방이 불교 선문화의 영향으로 선승들이 동안거(冬安居) 기간 동안 참선, 수행 등의 목적을 위해 건립되었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선승들이 이곳에서 수행해 왔던 사실을 여러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경상남도와 하동군은 전통불교 선문화와 온돌문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지난 197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河東) 칠불사(七佛寺) 아자방지(亞字房址)’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2. 연혁 · 유래 및 특징

- 아자방은 방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 약 60cm 높이의 단(段)을 ‘ㄷ’자형으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함으로서 그 아래가 자연스럽게 ‘十’자 형태가 되어 전체적으로 방바닥이 ‘亞’자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 방 아래에는 이러한 형상에 따라 온돌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ㄷ자와 十자 부분이 서로 높이가 달라 구들이 상·하 이중으로 놓이는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관련 기록과 전해져 오는 여러 전언에 따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100일 혹은 49일 정도 온기가 있었다고 한다.
- 아자방은 오랜 기간 동안 중건(重建) 또는 중수(重修)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정할 만한 것으로는 임진왜란으로 훼손된 칠불사 전각을 중수하였다는 것과 1830년 칠불사 화재 후 1832년 소실된 전각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도 한 차례의 보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광복 후에는 여순사건과 6·25전쟁 등으로 칠불사 전각들이 소실되면서 아자방도 함께 훼손되었고 이후로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어 왔던 것을 1980~1983년에 실시한 칠불사 전각 복원 과정에서 구들을 포함한 아자방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1982년)도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2009년에 함실아궁이의 이Matt돌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아자방 온돌에 대한 해체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17년에는 구들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복원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 일련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82년 복원공사 당시 북쪽 외곽에서 아자방 관련 굴뚝개자리 흔적이 확인된 반면 다른 온돌시설(구들, 고래둑, 연도, 굴뚝 등) 대부분은 이미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발굴조사(2017년)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유구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석축과 박석,

확돌 유구와 함께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보조아궁이, 계단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 참고로 2017년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와 조선 두 시대의 건물지 일부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주요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고려시대 건물지의 경우 온돌방과 부엌에서 확인되었는데 온돌방에는 적심 2기와 수혈 1기, 적석시설이 확인되었고 부엌 바닥면에서는 박석과 석렬, 방형의 확돌이 발견되었다. 다만 건물지의 구체적인 축조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조선시대 건물지의 경우에는 1832년 중건된 시점의 유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온돌방 북쪽의 굴뚝개자리 흔적, 서쪽 외곽의 기단석렬, 남서쪽 벽체 하부의 고래둑 흔적, 북서쪽과 북동쪽 모서리의 연도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
- 현재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온돌과 함께 목조건축물의 아자방을 복원한 상태로 이에 대한 건축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원된 목조건축물은 정면5칸×측면2칸 규모의 一자형 장방형 평면으로 지붕 가구는 맞배 기와지붕의 5량가로 짜 올렸고 외진 평주 상부에는 이익공 공포를 구성하였다. 평면구성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좌측부터 2칸의 부엌과 3칸의 온돌방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온돌방 배면 쪽으로는 반 칸 규모의 퇴가 달려 있는데 향후 우물마루가 설치할 예정이다.
 - 복원된 아자방은 구들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아궁이 쪽의 고래 및 고래둑, 구들장 일부를 노출하여 그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함실아궁이에서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들어온 불길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놓인 줄고래로 연결되고 함실 위에서는 쪽구들 형태로 벽체를 따라 丁자형으로 구들이 설치되는 등 상·하 이중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아자방(온돌방) 남측으로는 부엌 2칸이 달려있는데 내부 중앙부에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큰 가마형태의 아궁이와 함께 좌측편으로 보조 기능의 작은 아궁이 1개소와 계단이 복원되어 있다. 부엌과 아자방(온돌방)이 대략 1.6m 정도 높이의 단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근거로 아궁이의 규모와 높이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궁이 반대편으로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초석(박석)과 확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노출되어 있다.
 - 이밖에 아자방(온돌방) 북쪽에는 일정한 간격 두고 방형의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데 발굴조사 과정에서 그 아래에 굴뚝개자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아자방은 하동군에서 지난 2021년 1982년 복원 공사 당시의 자료와 2017년 실시한 정밀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건물 및 복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계전문가(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의 기술지도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의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국가민속문화재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으로 것으로서 의식주, 생산생업, 교통운수통신, 교역, 사회생활, 신앙, 민속지식,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에 관한 것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정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아자방 온돌은 우리나라의 전통 온돌과 불교의 선문화가 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민속유산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유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선승들의 수행처로 사용되어 왔던 공간으로서 불교사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유구 일부를 확인한 것과 여러 형식의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이나마 아자방 온돌의 구조 및 규모, 용도, 명칭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온돌이 양주 회암사지 등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여러 차례의 소실과 복원(보수)공사 등을 거치면서 본래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되는데 특히, 부엌의 가마형 아궁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돌(구들)이라는 유산의 성격으로 볼 때 원형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즉, 구들 자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향후에라도 문화유산적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정 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등의 영역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인근에 아자방(온돌방)을 재현한 시설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보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홍성 사운고택 주변 마을쉼터 조성(재심의)

가. 제안사항

충남 홍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홍성 사운고택」 주변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홍성 사운고택」 주변 마을쉼터 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함
※ 제7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23.7.11.) : 부결
 - 문화재 경관과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홍성 사운고택」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11, 312, 343
- (4) 신청내용 : 마을쉼터 조성
 - 식재공사 : 소나무 H6.0xW3.0xR30 12주, 느티나무 H5.0xR30 3주,
단풍나무 H3.5xR15 3주 외 17종
 - 시설공사 : 정자 2EA, 등의자 2EA, 평상 2EA, 마을쉼터 안내판 1EA
 - 포장공사 : 경화토포장(T100) 150m²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3. 9. 27.)

- 마을쉼터 조성에 있어서 시각적 간섭이 적어 경관과 조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획·설계 시, 원지형 유지, 장소성 부여, 경계처리, 시설도입, 식생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조경 식재 밀도 및 정자 형태·개수를 조정하여 시행

3. 장흥 오현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오현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오현고택」 주변 단독주택 증축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24m)에 해당함
 - ※ 제9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23.9.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 제10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23.10.10.):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오현고택」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 (3) 신청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69-1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증축

구 분	기존 건축물	1차 신청(부결) 2023.9.12.	2차 신청(부결) 2023.10.10.	금번 신청(안)
부지면적	660.0m ²	660.0m ²	660.0m ²	660.0m ²
건축면적	28.0m ²			
증축면적		78.0m ²	78.0m ²	78.0m ²
연 면 적	28.0m ²	106.0m ²	106.0m ²	106.0m ²
층 수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	4.2m	5.817m	4.95m	3.02m
구 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마 감 재	조립식판넬	스타코	벽돌타일(회색)	벽돌타일(회색)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오현고택 방향으로 차폐조경 식재 후 시행

4.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주변 태양광 설치가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41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함안 무기연당」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무기1길 33 (무기리)
- (3) 신청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36
- (4) 신청내용 : 태양광 설치
 - 건축면적 : 594.48m²(198.16m²+198.16m²+198.16m²)
 - 태양광 설치면적 : 470.0m²(156.54m²+156.54m²+156.54m²)
 - 설치용량 : 99.12kW(33.04kW+33.04kW+33.04kW)
 - 590W × 56ea = 33.04kW × 3개동
 - 최고높이 : 13.658m(기존건축물 12.2m + 태양광 시설물 1.458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도로 포장 및 정비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함
 - ※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17. 6월) : 보류 - 합동분과(사적, 세계, 민속) 의결에 따라 처리
 - ※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17. 7월) : 원안접수 - 세계유산 등재결정 이후 민속분과에서 검토
 - ※ 제6차 민속문화재분과('19. 8월) : 보류 - 부분포장 및 정비방안 수립 후 재심의
 - ※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19. 10월)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장확인 후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일원(풍천 병산도로-군도5호선)
- (4) 신청내용 :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 황토포장면적 : 4,060m²
 - 포장길이 : 780m(폭 B=5~10m, 두께 T=20cm)
 - L형측구설치 : H=0.5m~1.0m × L=211m
 - 비상정차대설치(2개소), 가드레일설치(203경간)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회 ○○○/2023. 11. 1.)

- 본 사업은 풍천 병산도로(군도5호선)포장 및 정비 공사 견으로 도로포장의 경우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필요성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세계 유산으로서 병산서원 일원의 유산적 가치, 즉 주변 원생경관과의 조화를 통한 완전성 및 진정성 제고 측면에서 비상정차대 및 측구의 설치의 경우 방재(기후변화 등) 및 위기관리(안전 등) 관점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훼손 우려

6.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기간 연장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기간 연장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함
※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19. 7월) : 조건부 가결
 - 사용기한 2년으로 조정, 성·절토 최소화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5-16
- (4) 신청내용 :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설치기간 연장
 - 주차장면적 : 1,610m²
 - 임시주차면 : 47면
 - 주차장 바닥(토사 다짐), 주차장 자연배수
※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기간 연장 재승인 요청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한 연장을 허가하되, 기한(2년) 도래 전 재검토

7. 안동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주변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가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및 1구역(이격거리 120m)에 위치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391-1, 기산리 1157-1, 도양리 1391 외 88필지
- (4) 신청내용 :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 사업면적 : 355,300m²
 - 주요수종 : 벼드나무, 아카시아, 갯버들,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등

구분	수종	임령	평균경급(cm)	평균수고(m)	본수
문화재구역	벼드나무	21(10~54)	12(6~34)	6(5~12)	16,762
	왕버들	12(9~24)	8(6~18)	5(5~8)	1,271
	아까시아	11(8~23)	8(6~18)	7(6~10)	344
	기타 활엽수	22(9~29)	14(6~20)	6(5~7)	26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벼드나무	25(10~64)	14(6~40)	6(5~13)	1,964
	왕버들	12(9~19)	8(6~14)	5(5~7)	81
	아까시아	11(8~10)	8(6~8)	5(5~6)	100
	기타 활엽수	13(9~12)	8(6~8)	5(5~6)	81
	이태리 포플러	22(9~44)	14(6~30)	8(5~16)	353

※ 제거 사유 :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장마·우기 시 홍수피해 예방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3. 9. 26.)

- 본 사업은 하회마을로부터 약 2km 지점, 문화재지정구역 및 1구역의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임
- 1900년대 중반 항공사진에 따르면 백사장만 있고 수목은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됨. 따라서, 수림의 조성은 약 50~70년 정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수목이 커져서 수량이 증가할 경우 지장물 등이 걸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홍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장목을 제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거 후 지장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권고됨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23. 9. 26.)

- 낙동강변 하회마을~구담보 구간에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는 사업임
- 하천 퇴적층에 자연 발생한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하천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에 줄 영향과 홍수피해 가능성은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업으로 사료됨
- 불가피한 사업이더라도 대상지가 문화재구역 내에 있으므로 유수지장목 제거 후 문화재 경관에 문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대상지를 잘 정리하여야 함
- 유수지장목 제거 과정 중에 퇴적층이 쌓이기 전 원래의 토층이 나오게 되면 되도록 이를 기준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8. 경주 양동마을 내 노유자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내 노유자시설 및 제1종 균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내 노유자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함
※ 제9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의(‘22. 10. 14.) : 부결 - 종교집회장 건축행위는 민속마을의 진정성 유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경주 양동마을」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대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5-8
- (4) 신청내용 : 노유자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용목적 : 어린이집, 마을공동시설, 대피소
 - 부지면적 : 1,003m²
 - 건축면적/연면적 : 198.24m²/642.94m²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층, 최고높이 6.15m
 - 건축구조 : 지하1층(철근콘크리트), 지상1층(중목구조)
 - 기 타 : 외부마감(탄화목 사이딩, 징크기와)

라. 의결사항

- 부결
 - 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당위성 부족

9. 장흥 방촌리 석장승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방촌리 석장승」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방촌리 석장승」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장흥 방촌리 석장승」
 -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2
- (3) 신청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8-1, 578-11
- (4) 신청내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 부지면적 : 403.0m²
 - 건축면적/연면적 : 104.5m²/104.5m²
 - 건축규모 : 지상1층, 최고높이 4.5m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3.11.3.)

- 해당문화재는 장흥군 관산읍에서 방촌리로 넘어가는 23번 국도변 양쪽에 각 1기씩 위치하고 석장승으로 지난 2013.6.14.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동 건은 해당문화재의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1동(2008~2009년 신축 추정)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이를 감안하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합법화로 인해 해당문화재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 등 17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존정책과 주관 연구용역 실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 2021년 용역(인천, 경기, 부산 200건)
 - 2022년 용역(서울, 대전, 울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제주 378건)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 등 17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보물	강릉 선교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63
		강릉 오죽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강릉 해운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125
2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어명기 고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3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4	국가민속문화재	태백산 천제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4-31, 협동 산87-2
5	국가민속문화재	세종 홍판서택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6	국가민속문화재	보물	대전 회덕 동춘당
		대전 동춘당 종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
		대전 소대한·호연재 고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70
7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잣동네 밀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9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당거리동네 밀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암리 1009-1
10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56(궁평리)
		화성 정수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11	국가민속문화재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도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2) 변경 내용: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현행화 및 용어 표준화

- 문화재청 훈령 제652호(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 <별첨: 세부내용> 참조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금회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신청 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 마련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 규제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용역 발주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1차, 2차) 결과에 따라 신청하게 된 사항임
- 다만, 용역 기간에 따라 일부 문구나 단어가 다르므로 최근 개정된 “국가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652호, 2023.10.31.)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하고자 함 예시) ('21년)기준 건축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22년)기준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회 조정은 공통사항 현행화 및 용어 표준화에 대한 것으로, 구역별 세부 허가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필요

<참고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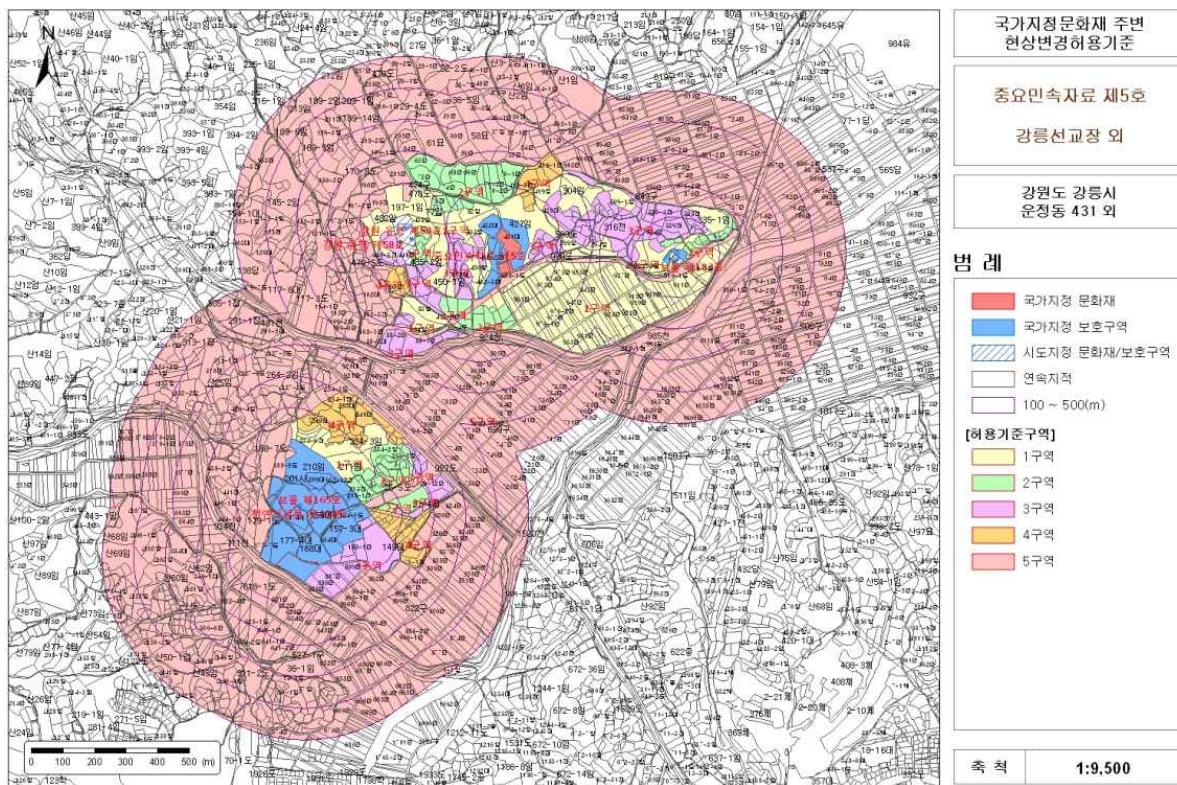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화재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절 · 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 ·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별첨: 세부내용>

1.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 보물 「강릉 오죽헌」, 「강릉 해운정」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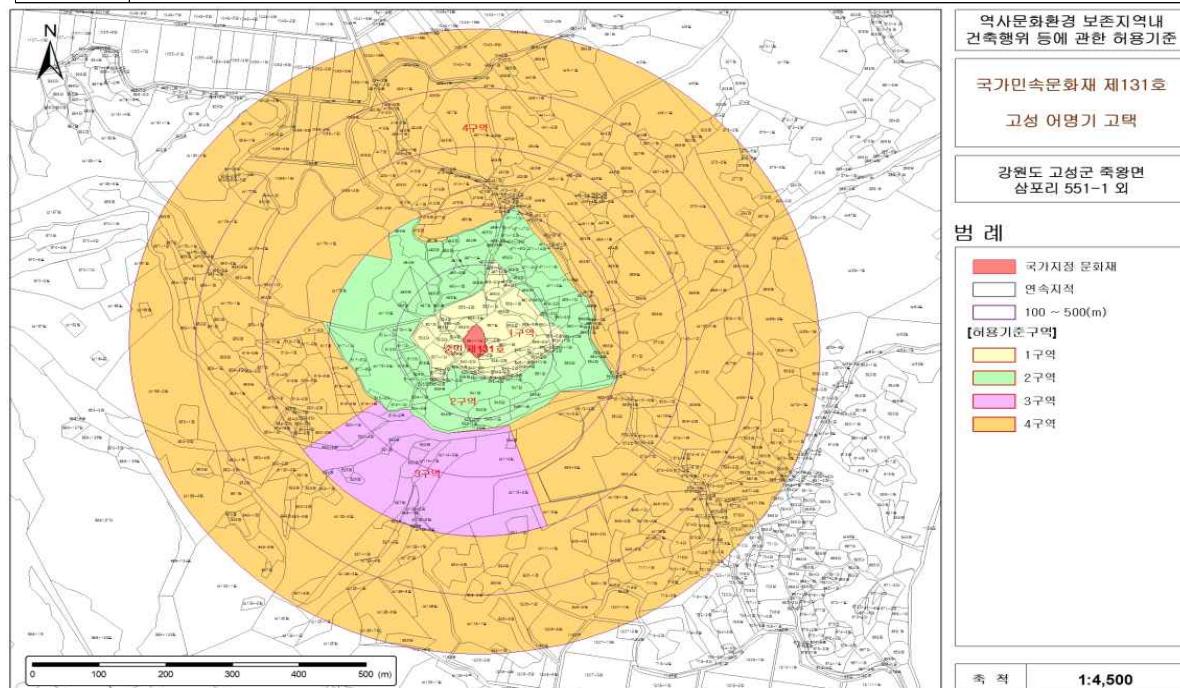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5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8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1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2.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어명기 고택」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을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을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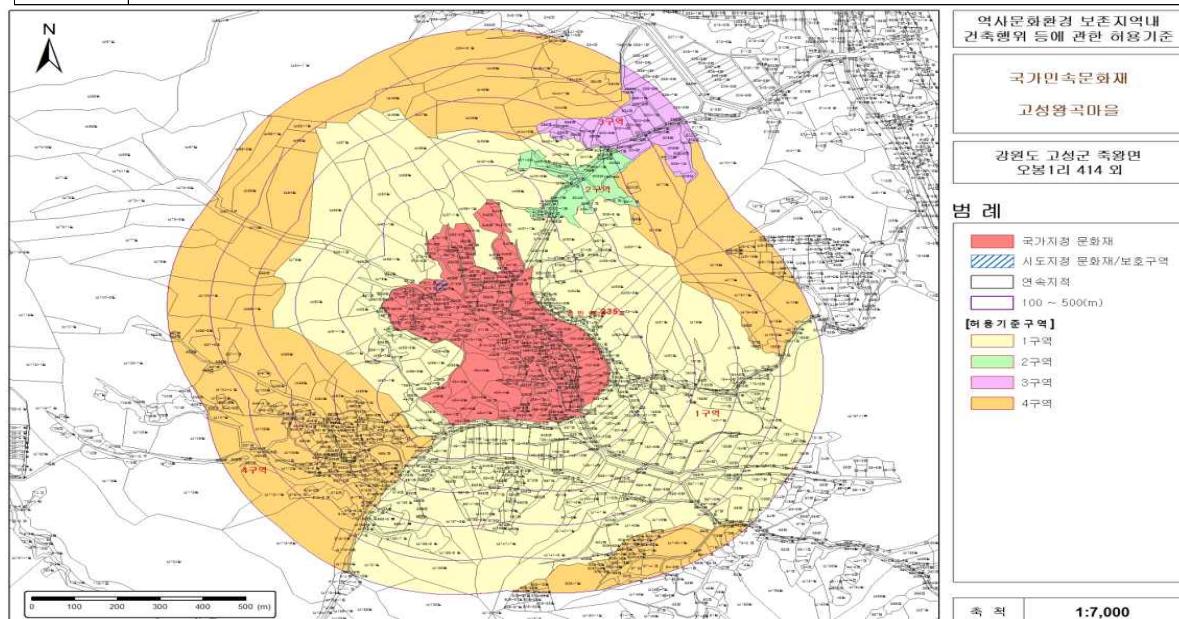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송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3.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을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다. 단, 경사 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을 개별 심의함(단, 경사 지붕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을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고성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관련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이내 적용)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3구역 이내 적용)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4. 국가민속문화재 「태백산 천제단」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1구역 (지정구역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2구역 (사찰경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준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 시 2m 이상의 절토·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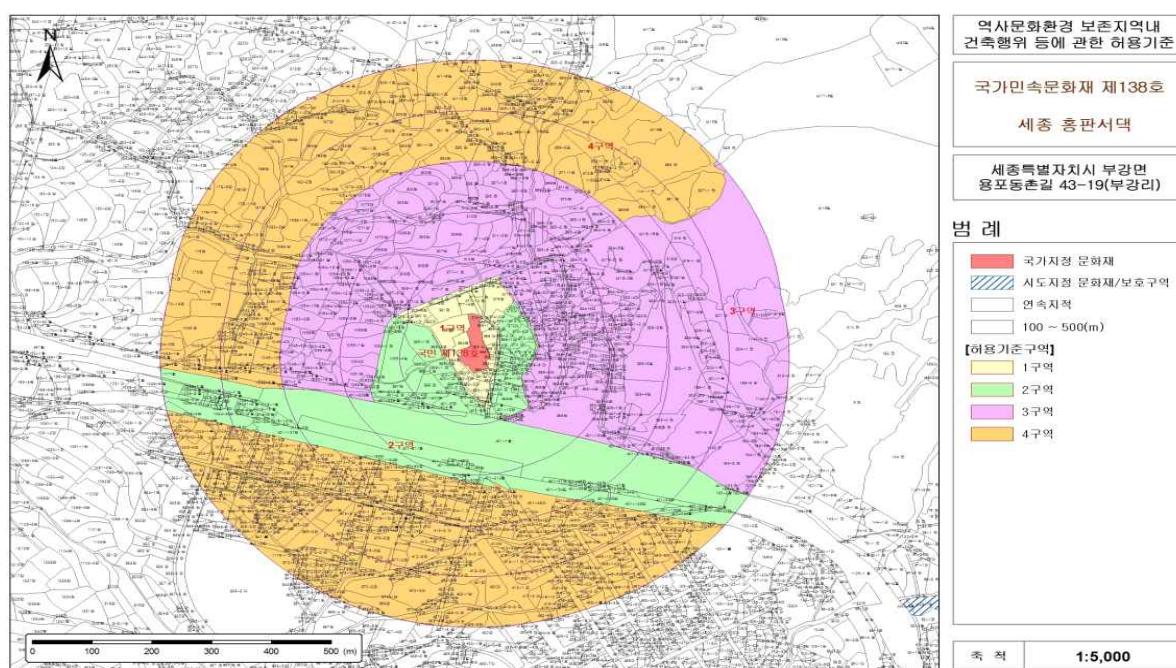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검토
2구역 (사찰경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높이 12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2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5. 국가민속문화재 「세종 홍판서택」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옥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사항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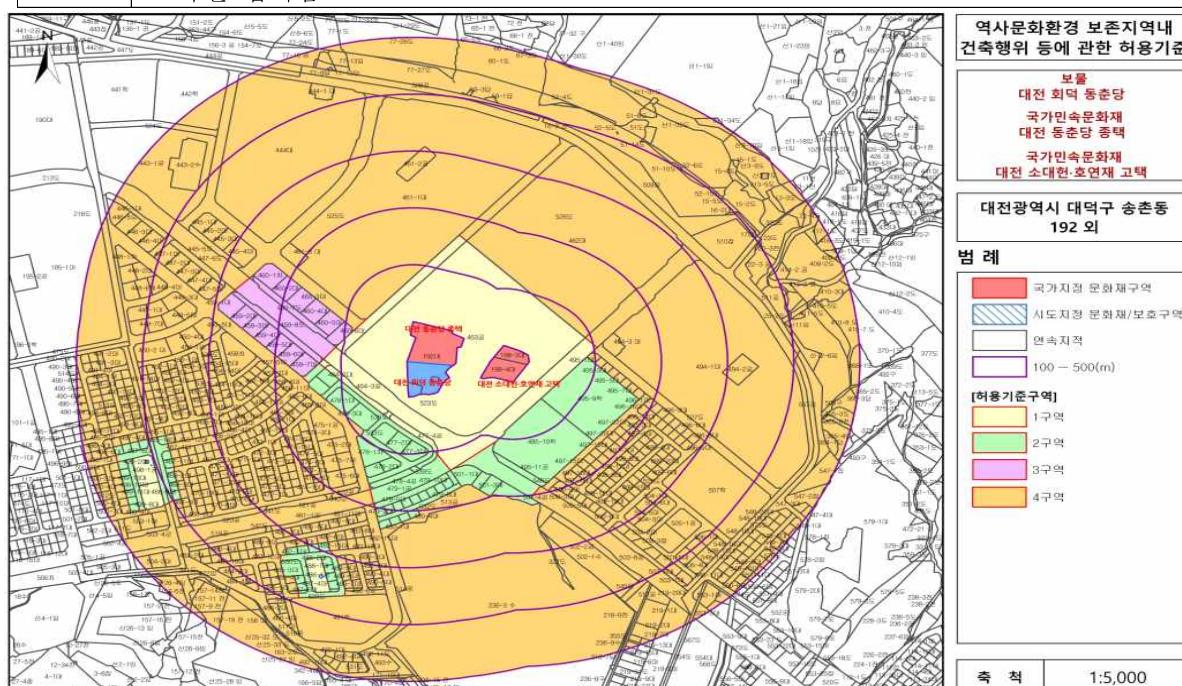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을 개별 검토함(2구역, 3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을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6. 보물 「대전 회덕 동춘당」, 국가민속문화재 「대전 동춘당 종택」, 「대전 소대현·호연재 고택」

<조정 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26m 이하	•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옥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검토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17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26m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식물 관련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설치제한(전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0.5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검토함(1구역에 한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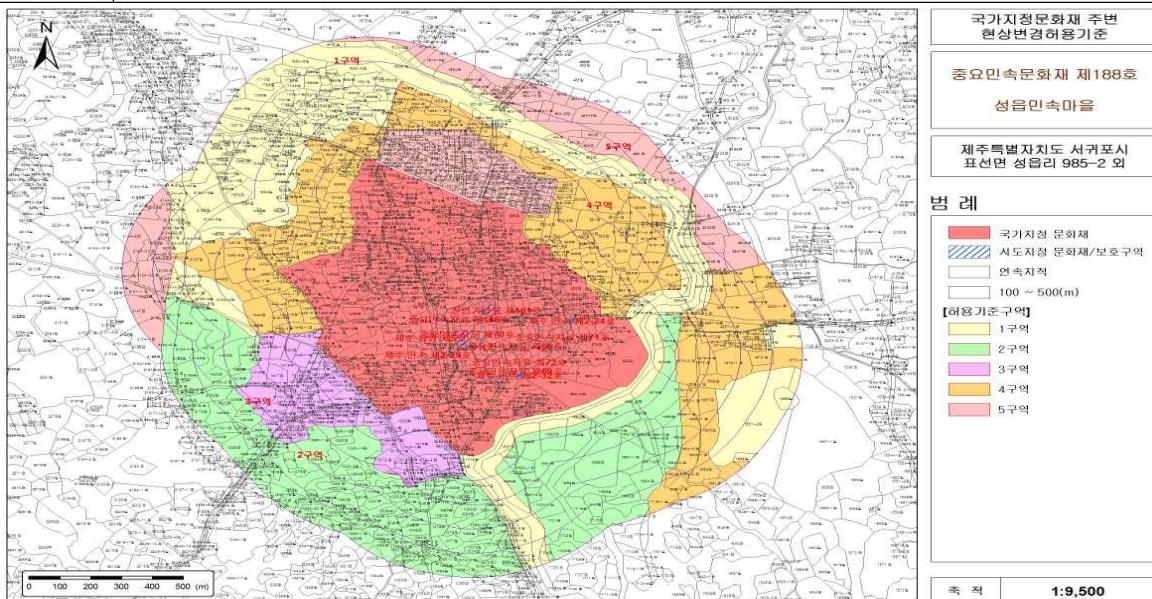
7.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및 천연기념물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조정 전> 천연기념물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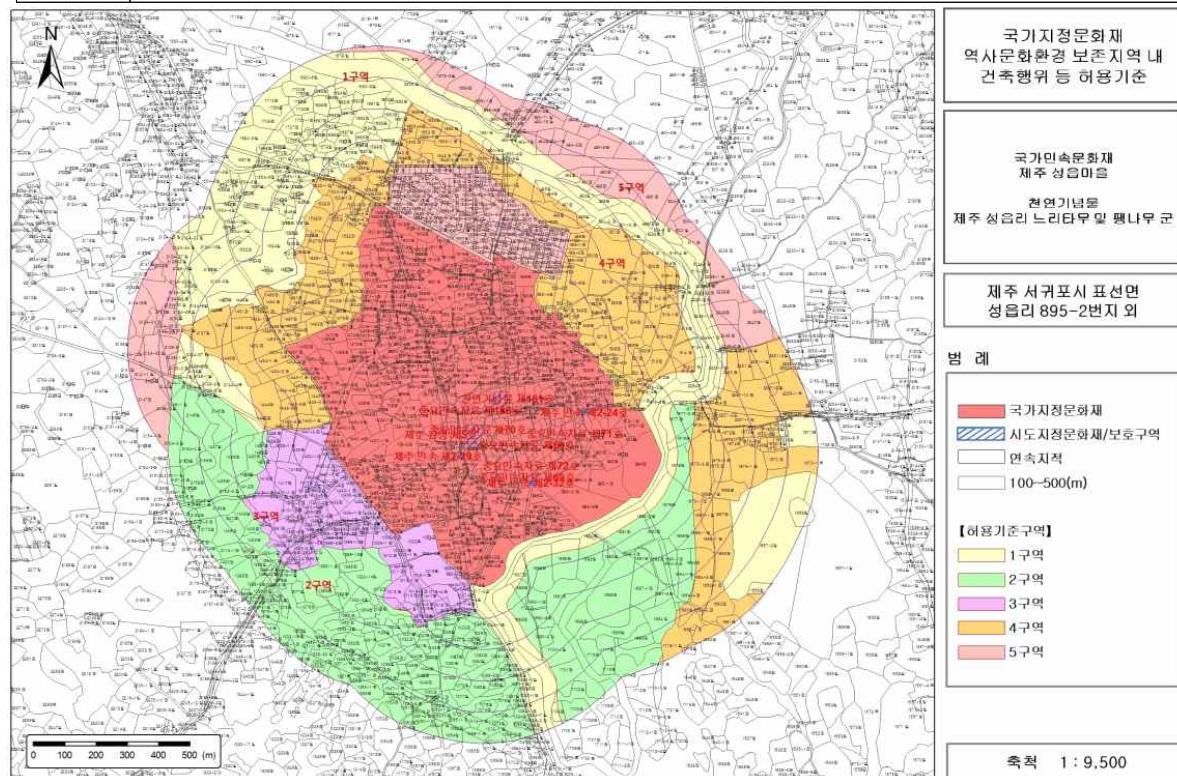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신축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 신축불가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을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봉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통합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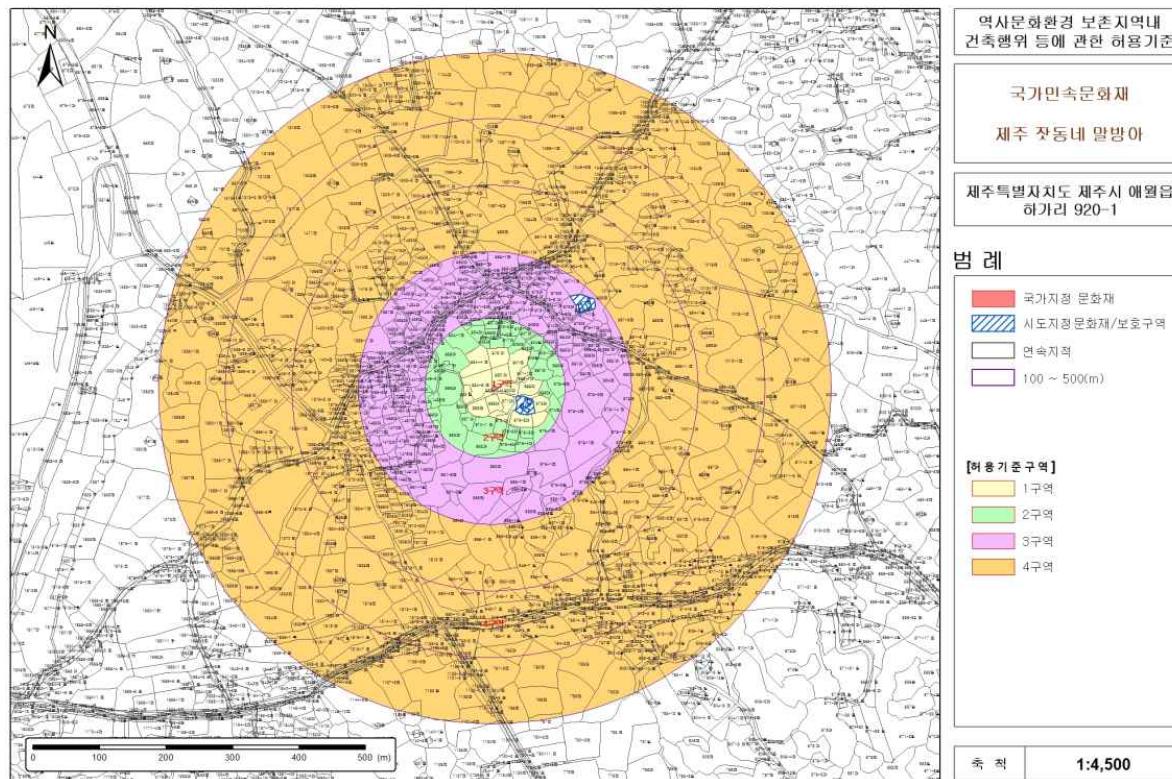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신축불가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 신축불가	•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잣동네 말방아」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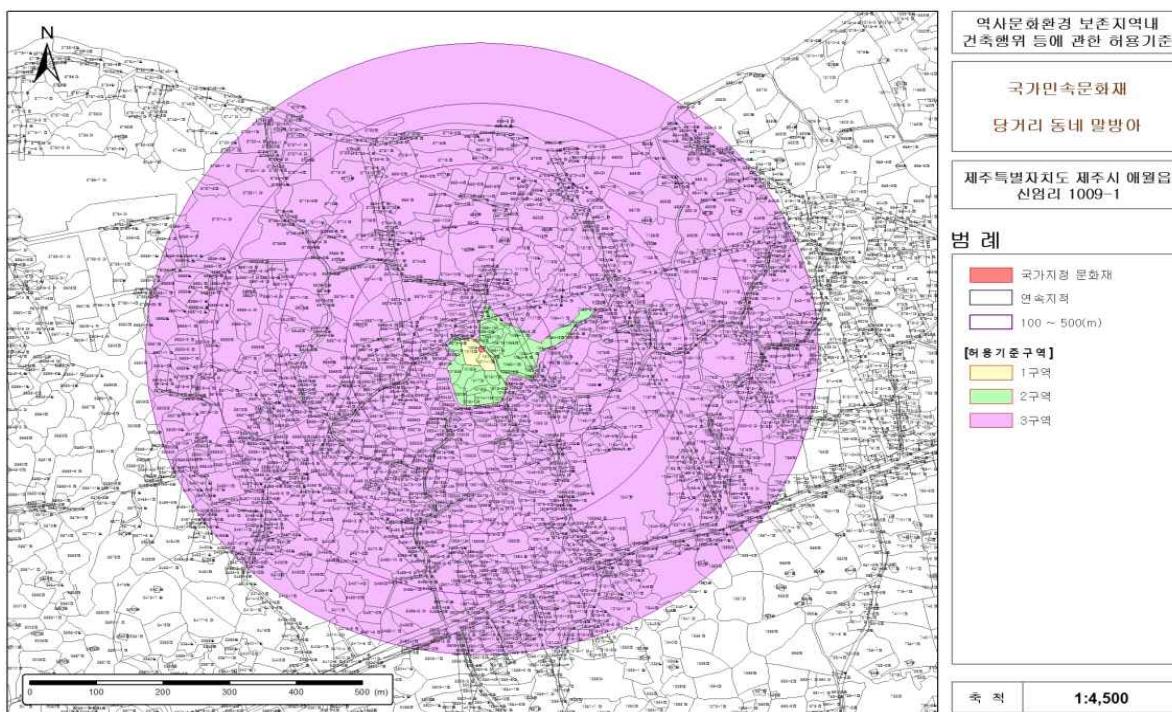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벽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9.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준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의 절·성토는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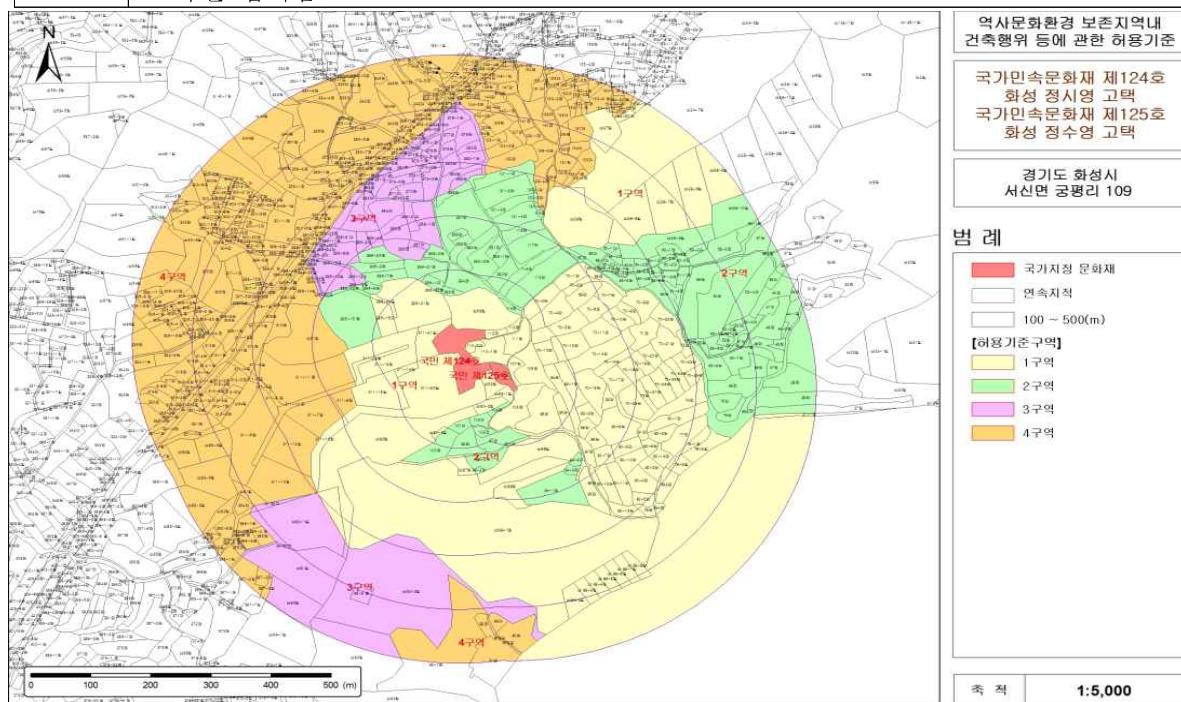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지붕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는 높이 0.5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도면 변경 없음

10. 국가민속문화재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을 개별심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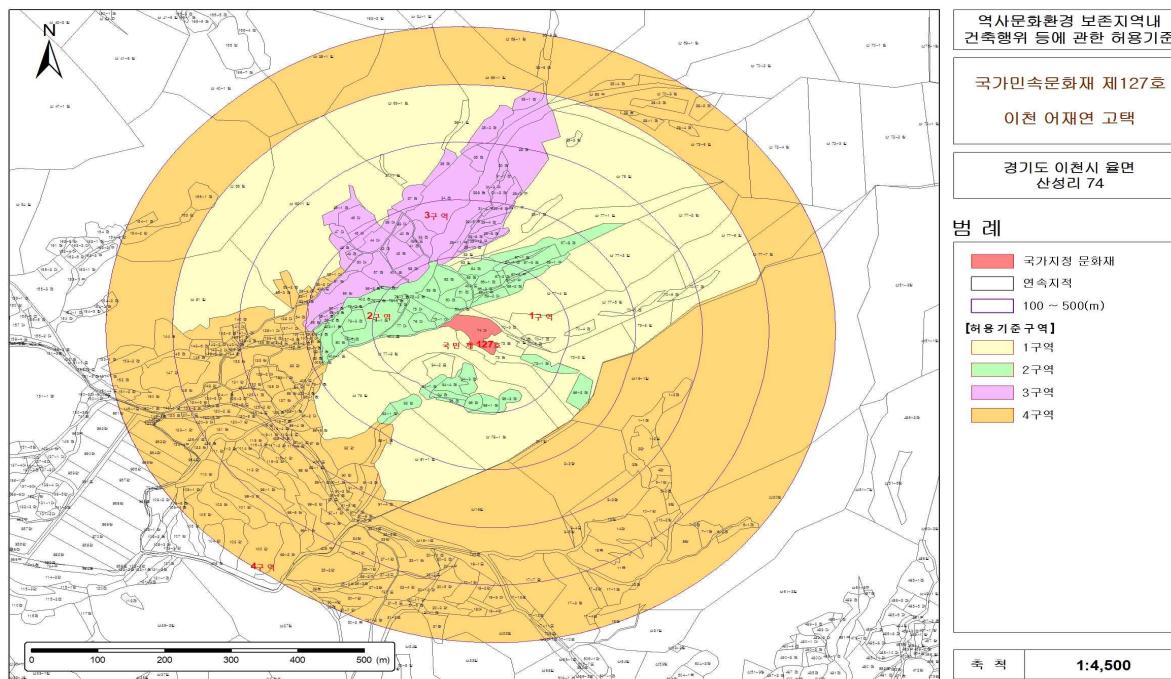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봉	경사지봉(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봉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사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면 변경 없음

11. 국가민속문화재 「이천 어재연 고택」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사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 도면 변경 없음

검 토 사 항

11.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민속문화재의 전통성 보존 및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내 ‘방풍 설비’에 관한 항목 신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아. 방풍 설비

-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고택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청(누각형 건물은 제외) 전면에 한해 방풍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물은 창호가 아닌 임시 시설물로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원형과 혼돈되지 않도록 목재가 아니면서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과 재질, 무광택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 (3) 추진경과

- 민속마을 주민 대상 설문조사(‘23. 8. 17. ~ 9. 3.)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3. 9. 18.)
- 관계부서, 지자체 등 의견 조회(‘23. 10. 26. ~ 11. 15.)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참고>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제정	2011. 11. 3.	문화재청 고시	제2011-154호
일부개정	2013. 9. 2.	문화재청 고시	제2013- 89호
일부개정	2014. 11. 10.	문화재청 고시	제2014-113호
일부개정	2015. 11. 26.	문화재청 고시	제2015-115호
일부개정	2019. 12. 6.	문화재청 고시	제2019-164호
일부개정	2023. ○. ○.	문화재청 고시	제2023-○○호

1. 적용범위

- 가.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2. 적용방법

- 가. 동 설치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상변경 허가할 경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3. 비용부담

- 가. 설치비용은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고증 등을 통한 원형복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분별 기본원칙

가. 일반원칙

- 문화재로 지정된 고유한 특성(구조·기둥·보 등의 특수한 기법·양식)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 현재의 경관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주거시설과 부속시설, 주변(담장·마당·뒷뜰 등)의 변형된 경관은 원형을 고증하여 회복하도록 한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안)의 적용으로 인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한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시공전후 관련 자료(사진, 도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문화재청에 보고한다.

나. 공간의 변경

- 단순히 방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행위는 금지하며, 내부의 방을 하나로 합쳐 큰 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쳐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건축 구조

- 주요 구조부는 전통 구조수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내부구조는 원형의 훠손이 없는 선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현대생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
-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열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 재료

- 외부로 노출되는 재료는 전통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창호의 경우 현대식 재료(샷시, 단열재료 등)는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목재창호 안쪽에 사용한다.
- 현대적 재료의 도입 시에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에 설치되는 수납함 등은 은폐를 위해 최소한의 크기로 제작,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주택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건축 설비

- 전통적인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식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외부 노출시설은 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토록 한다.
- 건물 내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외관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되, 정화조의 배수구는 공동 오수처리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5.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가. 방 및 공간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내부공간 활용을 위한 방 면적 변형 시에는 가옥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훠손(방·대청 통합, 개방공간의 차폐 등)해서는 안되며, 칸막이 벽 제거 시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

나. 부엌

- 가옥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아궁이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생활을 위해 부득이 부엌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궁이에 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토록 한다.
-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 한다.

다. 화장실 및 욕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 내부는 현대식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습기로 인해 목부재의 부후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냉·난방 시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보일러실·에어컨 실외기 등은 가능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냉방기기·가스통 등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가리개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전통가옥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화장실+보일러실)

- 연료탱크는 가능한 한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체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 창 호

-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적인 형태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설치한다.

- 기존의 전통창호는 변형할 수 없으며 안쪽에 이중창을 설치할 때는 목재와 유사한 색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환기·단열 등을 위한 창호 설치 시 외부는 전통형태를 유지하고, 내부에 현대창호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 가옥 내 노약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보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목재와 같이 한옥과 어울리고 철거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한다.

사. 빗물받이 및 물흡통

- 지붕의 쳐마 내밀기가 짧아 낙수물이 기단 내로 떨어져서 기둥, 벽체 등이 훼손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쳐마 빗물받이 및 물흡통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방풍 설비

-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고택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청(누각형 건물은 제외) 전면에 한해 방풍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물은 창호가 아닌 임시 시설물로 가역성이 있어야 하며, 원형과 혼돈되지 않도록 목재가 아니면서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과 재질, 무광택의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6. 재검토기한

- 가. 문화재청장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행일

- 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 고 사 항

12.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 내용	처리 결과
계		4건	허가 4건
제주 성읍마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 ○ ○)	<p><input type="checkbox"/> 제주 성읍마을 주변 성읍119지역센터 훈련용 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382-1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45m (2구역) ○ 사업내용: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 기타강구조(컨테이너) 2동 -면적: 36m²(3m×6m×2동) -높이: 2.65m -용도: 화재진압 및 구조전술 훈련시설 <p>※ 2018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민속분과): 원안가결 - 성읍119지역센터 재건축 승인 ('18.4.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사업대상지가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나 3구역에 연접해있고, 2018년에 119센터 재건축 사안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부여 여홍민씨 고택	충남 부여군 (○ ○ ○)	<p><input type="checkbox"/> 부여 여홍민씨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진·출입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489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70m 이격 (4구역) ○ 사업내용: 단독주택 신축 진·출입로 개설 - 진·출입로 개설(W=4.0m, L=33.3m) - 블록식 용벽 설치(H=1.0~1.7m, L=41m) - 건축면적/연면적: 129.15m²/129.15m² - 높이/층수: 6.55m/지상1층 - 구조: 경량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허용기준 내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성주 한개마을	경북 성주군 (○ ○ ○)	<p><input type="checkbox"/> 성주 한개마을 주변 태양광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공단길 107 ○ 이격거리: 보호구역에서 360m 이격 (3구역) ○ 사업내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건물면적: 1,394.88m² - 태양광 설치면적: 323.77m² - 설치용량: 70kW - 태양광 설치높이: A동-0.484m, B동-0.16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성주 한개마을 외곽 산 안쪽에 위치한 공단 내 태양광 설치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태백산 천제단	강원 태백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태백산 천제단 주변 안내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위치: 강원 태백시 소도동 산 80 ○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0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안내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 해설 안내판 2개소 설치 - 규격: H2,100 x W2,000 - 안내판 고정용 시멘트 지중 타설(400x400x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내 관리중인 비지정문화재 및 유물 해설을 위한 안내판 설치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	--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